보건소

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사 업 설 명 서

보건행정과

(청사 유지 관리) (P - 213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01. ~ 2022.12.　　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14개소(보건소, 보건지소6, 보건진료소7)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주기적인 청사시설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617,195**	**485,754**	**405,354**	**0**	**80,400**	**-131,441**	
국 비		0				0	
도 비		0				0	
시 비	617,195	485,754	405,354		**80,400**	-131,441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코로나19 대응 및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청사 운영 시간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

○ 공용차량 운영 증가 및 유류요금 증가에 따른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증액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1.11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및 재택치료 추진단 운영,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를 위한 업무시간 증가로 하반기 보건소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증액 필요

○ 상반기 재택치료자 물품배송 및 환자 이송 건 증가로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증액 필요

○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한 재택치료 추진단 지속 운영 필요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**80,400**	
청사 유지 관리	201-02 공공운영비	◎ 청사 공공운영비 =	**54,000**	
		· 전기요금 : 경정(6,800,000원*12월)-기정(5,100,000원*12월) =	20,400	
		· 도시가스요금 : 경정(5,000,000원*12월)-기정(2,200,000원*12월) =	33,600	
		◎ 차량 유지관리비		
		경정(400,000원*11대*12월)-기정(200,000원*11대*12월) =	**26,400**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~2022.12. : 청사운영 용역계약 및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사무관리비(기자재, 소모품 등) : 38,338천원(집행율 82.3%) - 공공운영비(청사유지관리용역, 공공요금, 시설물유지관리비) : 234,238천원(집행율 97.9%) - 자산취득비(민원접수대, 교육실 음향장비 등) : 25,005천원(집행율 99.6%)	
2021년	-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: 97,055천원(집행율 92%) - 사무관리비(기자재, 소모품 등) : 39,161천원(집행율 90%) - 공공운영비(청사유지관리용역, 공공요금, 시설물유지관리비) : 241,064천원(집행율 99.7%) - 자산취득비(신규 직원 책상·의자·사물함, 교육실 음향장비 등) : 44,417천원(집행율 99%, 이월액 제외)	
2022년	-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: 58,681천원(집행율 54.7%) - 사무관리비(기자재, 소모품 등) : 17,974천원(집행율 40%) - 공공운영비(청사유지관리용역, 공공요금, 시설물유지관리비) : 171,614천원(집행율 71%) - 시설비(통신실 냉난방기) : 4,600천원(집행율 100%) - 자산취득비(냉난방기, 청소원 냉장고, 특수구급차) : 188,175천원(집행율 99.6%)	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310,860	297,581	-	13,279	
2021년	617,195	421,667	181,637	13,891	
2022년	586,991	441,044		145,947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보건행정팀장 김지영	담당자	의료기술8급 김민정	전화	4006

(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) (P - 213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. ~ 2022. 12.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시민건강증진 도모

○ 예산요구 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2,480**	**35,000**	**39,560**	**0**	**-4,560**	**32,520**	
국 비		0				0	
도 비		0				0	
시 비	2,480	35,000	39,560		**-4,560**	32,520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-1452(2022.02.25.)호 : 제7기 '21년 시행결과 및 '22년 시행계획 제출 면제,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('23.~'26.) 제출 연기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역보건법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	제13조 및 제24조 제1항, 제5조 제2항 제1호
근거내용	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국가와 시·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제5조의2(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)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미제작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운영으로 예산 감액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	**△4,560**	
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	201-01 사무관리비	◎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배부 경정(0원)-기정(10,000원*100권*2회) ◎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경정(0원)-기정(80,000원*16명*2회)	= =	△2,000 △2,560	△4,56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8. :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단 구성, 연구용역 입찰 및 선정, 계약
- 2022.08.~12. :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 활동
- 2023.01. : 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
- 2023.02. :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
- 2023.03. : 김포시의회 계획수립 보고 및 경기도 제출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수립 -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회 -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책 제작	
2021년	-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수립 -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회 -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책 제작	
2022년	-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설명회 및 담당자 교육 참석	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2,480	2,283	-	197	
2021년	2,480	2,465	-	15	
2022년	39,560	-		-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보건행정팀장 김지영	담당자	간호6급 최보라	전화	4003

(양촌읍보건지소 운영) (P - 213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01~2022.12.　　○ 위치 :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68번길 37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양촌읍보건지소 진료환자 및 내소민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
보건소 접근성 강화로 신속한 민원응대 처리 및 시민 만족도 증가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2회 추경 증감액 (E)		
계	1,773	8,660	18,020	0	-9,770	6,477	
국 비		0				0	
도 비		0				0	
시 비	1,773	8,250	18,020		-9,770	6,477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코로나19 대응으로 양촌읍보건지소가 미운영되었던 기간(1~4월)의 업무대행 인건비,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 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역보건법	제13조 및 제24조 제1항
근거내용	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국가와 시·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1.11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제증명 검사 전문인력(방사선사1, 임상병리사1) 교육연가 등 업무 공백시 대체인력 인건비 감액

○ 감염병 의심 환자의 신속한 검체 이송을 위한 운송 수수료 감액

○ 보건지소 사무실 및 화장실 청소 관리비(주2회) 감액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양촌읍 보건지소 운영		**합 계**	**△9,770**	
	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◎ 제증명 검사 업무 대행 인건비 · 방사선실, 검사실 대체인력 = 경정(100,000원*1명*1일)-기정(100,000원*2명*15일)	**△2,900**	△2,900
	201-01 사무관리비	◎ 민원접수실 운영 = ·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 경정(40,000원*3월)-기정(40,000원*12월) = · 제증명 접수 서식 인쇄비 경정(100원*3,500매*6회)-기정(100원*3,500매*12회) = ◎ 검체 운송 수수료 경정(27,500원*8회*4월)-기정(27,500원*8회*12월) =	**△2,460** △360 △2,100 **△1,760**	△4,220
	201-02 공공운영비	◎ 청소 관리비(주2회) 경정(650,000원*7월)-기정(600,000원*12월) =	**△2,650**	△2,65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5.04.~07.03 : 양촌읍보건지소 제증명 업무 및 민원실 업무 운영 재개
- 2022.07.04.~08.15 :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업무중지
- 2022.08.16. : 양촌읍보건지소 제증명 업무 및 민원실 업무 운영 재개 예정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양촌읍보건지소 민원실 운영 실적 : 총 27,733건 · 제증명 : 건강진단결과서(구보건증)검사 20,395건, 건강진단서 검사 189건, 발급 7,149건	
2021년	- 실적없음	
2022년	- 양촌읍보건지소 민원실 운영 실적 : 총 1,640건 · 제증명 : 건강진단결과서(구보건증)검사 1,691건, 건강진단서 검사 0건, 발급 787건	5.4~보건증 재개 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7,528	5,520	-	2,008	
2021년	1,773	1,773		0	
2022년	18,020	2,028		15,992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양촌지소팀장 연은영	담당자	의료기술9급 양은지	전화	4112

(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) (P - 21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. ~ 2022. 12.　　○ 위치 :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-11외

○ 사업규모 : 보건지소 6개소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신속한 민원응대 처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증가

○ 예산요구 현황　　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37,630**	**31,210**	**94,289**	**0**	**-63,079**	**-6,420**	
국 비		0				0	
도 비		0				0	
시 비	37,630	31,210	94,289		**-63,079**	-6,420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통진읍, 대곶면, 하성면보건지소 상반기 미 운영으로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관련 예산 감액

○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22.05.04. 이전까지 양촌읍보건지소 미운영으로 인하여 한방진료 의약품과 제증명 검사 시 필요한 시약 및 기자재 예산을 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역보건법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	제13조 및 제24조 제1항, 제5조 제2항 제1호
근거내용	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국가와 시·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제5조의2(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)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	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2021.11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통진읍, 대곶면, 하성면 보건지소 미운영으로 공중보건의사 관사 미사용하여 예산 감액

○ 양촌읍보건지소 제증명 발급중단으로 생배지 등 검사시약 소모품 사용감소로 예산 감액

○ 양촌읍보건지소, 월곶면보건지소 처방에 따른 의약품비 감액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	△63,079	
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	201-01 사무관리비	◎공중보건의 관사 월세 경정(450,000원*3월*1개소+450,000원*6월*1개소) -기정(500,000원*12월*1개소+500,000원*9월*2개소) ◎관사 중개수수료 경정(220,000원*1개소)-기정(243,000원*3개소)	= =	△10,950 △509	△11,459
	307-01 의료 및 구료비	◎일반진료 의약품(월곶면) 경정(80,000원*13종*12월)-기정(80,000원*15종*12월) ◎한방진료 의약품(양촌읍) 경정(0원)-기정(15,000원*21종*12월) ◎검사 시약(양촌읍) 경정(70,000원*32종*4월)-기정(70,000원*32종*12월) ◎X-ray 판독비 경정(1,000원*50건*10회)-기정(1,000원*50건*20회) ◎진료기자재 경정(0원)-기정(500,000원*5회)	= = = = =	△1,920 △3,780 △17,920 △500 △2,500	△26,620
	406-01 기타자본이전	◎공중보건의 관사 보증금 경정(5,000,000원*1회)-기정(10,000,000원*3회)	=	△25,000	△25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5.~2022.12. : 검사실(양촌)보건지소 제증명 업무 및 민원실 운영
- 2022.07.~2022.12. : 보건지소 6개소 운영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보건지소(6개소) 운영 : 진료실적 1,619건, 예방접종 실적 : 185건 - 검사실 운영(양촌) : 검사실적 41,904건	
2021년	- 보건지소(6개소) 운영 : 진료실적 291건 - 검사실 운영(양촌) : 검사실적 없음	
2022년	- 보건지소(6개소) 운영 : 진료실적 133건 - 검사실 운영(양촌) : 검사 실적 3,483건	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44,688	43,406		1,282	
2021년	28,136	23,105		5,031	
2022년	94,289	18,544		75,745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보건행정팀장 김지영 양촌지소팀장 연은영	담당자	간호6급 최보라 의료기술9급 이인주	전화	4003 4113

(진료사업 운영) (P - 21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01~2022.12.　　○ 위치 :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김포시보건소 진료실, 방사선실, 물리치료실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보건소 내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증가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23,236**	**20,220**	**23,420**	**0**	**-3,200**	**-3,016**	
국 비		0				0	
도 비		0				0	
시 비	23,236	20,220	23,420		**-3,200**	-3,016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물리치료실 미운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, 사무관리비 감액

○ 진료업무 잠정 중단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역보건법	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
근거내용	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가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바. 지역주민에 대한 자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1.11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물리치료실, 방사선실 장비 운용에 따른 장비유지 및 보수비 감액

○ 만성통증질환자의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교실 운영 시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감액

○ 물리치료실, 방사선실, 진료실 담당자의 교육, 휴가 업무공백 시 전문적인 대체인력 인건비 감액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	**△3,200**	
진료사업 운영	101-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	◎진료사업 업무대행 인건비 · 진료실, 물리치료실, 방사선실 대체인력 : 경정(100,000원*3명*17일)-기정(100,000원*3명*20일)	=	△900	
	201-01 사무관리비	◎물리치료실 운영 · 물리치료 장비 유지비 경정(70,000원*10종)-기정(150,000원*10종)	=	△800	
	307-01 의료 및 구료비	◎물리치료 기자재 구입 (150,000*0종)-(150,000*10종)	=	△1,5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~2022.12. : 진료실, 방사선실, 물리치료실 대체인력 업무대행
  의료영상 저장 전송장치 유지보수(분기별)
  디지털방사산촬영장비 방화벽 유지보수(반기별)
- 2022.12.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진료실적 7,990건, 물리치료 1,008명, 흉부 방사선 촬영 6,346건, 업무대행 2회 -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: 9,217건 - 뇌병변 장애인 재활치료 :10회 54명 - 요통재활치료 : 10회 66명	
2021년	- 진료실적 6,214건, 흉부 방사선 촬영 483건, 업무대행 7회 -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: 516건	
2022년	- 진료실적 5,096건 - 흉부 방사선 촬영 6,654건, 업무대행 19회 -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: 6,050건 - 운전면허적성검사: 11건	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26,182	23,149		3,033	
2021년	23,236	22,120		1,116	
2022년	23,420	7,975		15,445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진료검진팀장 이석창	담당자	의료기술8급 이지혜	전화	4106

(민원실 운영) (P - 21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03~2022.08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1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민원실 인력확보를 통해 신속한 민원응대 처리로 민원 대기 시간 단축

○ 예산요구 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0**	**15,906**	**26,386**	**0**	**-10,480**	**15,906**	
국 비		0				0	
도 비		0				0	
시 비		15,906	26,386		-10,480	15,906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휴직 공무직의 복직 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기간 변경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역보건법	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
근거내용	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바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1.11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민원실 공무직근로자의 육아휴직(2022년 3월~8월),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으로 업무공백 해소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	**△10,480**	
민원실 운영	101-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	◎ 민원실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	=	**△9,274**	
		·기본급 경정(86,880원*1명*132일)-기정(86,880원*1명*209일)	=	△6,689	
		·유급휴일수당 경정(86,880원*1명*30일)-기정(86,880원*1명*54일)	=	△2,085	
		·명절휴가비 경정(500,000원*0회)-기정(500,000원*1회)	=	△500	
		◎ 4대보험료 경정(14,076,000원*13%)-기정(23,350,000원*13%)	=	**△1,206**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25. :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수립
  * 채용기간 : 2022.03.02. ~ 2022.08.31.
- 2022.02.07. ~ 2019.02.11. :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- 2022.02.23. :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
- 2022.03.~2022.08 : 업무수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민원접수 6,997건, 발급 12,068건	
2021년	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민원접수 375건, 발급 516건	
2022년	민원실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민원접수 6,912건, 발급 5,911건	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26,921	26,331		590	
2021년	-	-	-	-	
2022년	26,386	12,320		14,066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보건행정팀장 김지영	담당자	보건9급 이나영	전화	4007

(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) (P - 215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08. ~ 2022.10.　　○ 위　　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1회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생물테러대비 초동대응 요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0**	**3,400**	**3,000**	**0**	**400**	**3,400**	
국 비		1,700	1,500		200	1,700	
도 비		510	450		60	510	
시 비		1,190	1,050		140	1,190	
기 타		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경기도 질병정책과-24308(2022.06.29.)호 「'생물테러 대비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' 국고보조금 확정내역 변경 통보」에 따른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34조 제2항 제5호
근거내용	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, 동원 대상 인력, 시설,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생물테러 대비 체계적인 대응 교육 및 훈련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

○ 유관기관(경찰서, 소방서, 군부대 등) 공조 체계 구축으로 신속, 정확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생물테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**400**	
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	201-01 사무관리비	**◎ 생물태러대비 모의훈련 운영비** **경정(1,900,000원)-기정(1,500,000원)** = · 모의훈련장 현수막 제작 · 생물테러대비 모의훈련장 물품(텐트, 책상, 의자 등) 임대	**400**	
	201-03 행사운영비	◎ 생물테러대비 모의훈련대원 매식비 및 간식비 1,500,000원	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8. : 기본계획수립
- 2022.09. : 모의훈련 1차 사전회의
- 2022.09. : 초동대응요원(민·관·군·경) 교육
- 2022.10. : 모의훈련 2차 사전회의 및 현장 사전연습
- 2022.10. : 민·관·군·경 합동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미실시	코로나19로 미실시
2021년	- 미실시	코로나19로 미실시
2022년	- '22.10월 중 모의훈련 예정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20년	-	-	-	-	코로나19로 미실시
2021년	-	-	-	-	코로나19로 미실시
2022년	3,000	-	-	3,000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감염병대응·재택치료TF팀장 이순연	담당자	보건6급 함문선	전화	4067

(신종 감염병 긴급대응) (P - 215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01. ~ 2022.12.　　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김포시민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감염병 조기감지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

○ 예산요구 현황　　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5,173,396**	**1,928,625**	**3,153,036**	**398,005**	**-1,622,416**	**-3,244,771**	
국 비		0				0	
도 비	1,358,005	0				-1,358,005	
시 비	3,815,391	1,928,625	3,153,036	398,005	**-1,622,416**	-1,886,766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코로나19 대응(선별진료소, 임시선별검사소, 위생키트 전달)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

○ 코로나19 접촉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 및 재택치료자 감소로 운영물품 구입비, 차량 임차료 등 감액

○ 김포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중단('20.04.01.~'22.03.20.)으로 운영 경비 감액

○ 코로나19 구호물품 지급 중단에 따른 자가격리 지원 구호물품 구입비 감액

○ 확진자(격리자) 수 감소 및 이동수단 다양화(자차이용 가능 등)로 민간 운영 구급대 이용 수수료 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
근거내용	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,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(이하 "감염병관리기관등"이라 한다)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. ②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(自家)치료,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(이하 "시설치료"라 한다)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. 1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.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. 감염병의심자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1.11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하반기 재유행 대비 재택치료 추진단 지속운영 및 신종감염병 예방·대응

○ 2022.01.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등으로 1회 추경 증액했으나 확진자(격리자) 수 감소 및 이동수단 다양화(자차이용 가능 등)로 긴급이송 및 전원에 필요한 민간 운영 구급대 이용 수수료 감액

○ 보건소 특수구급차량 1대 추가 구비로 민간 운영 구급대 이용 수수료 감액 편성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 =	**△1,622,416**	
신종 감염병 긴급대응	101-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	**◎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부임(8개월)**		△177,484
		경정(250,216,000원)-기정(368,487,000원) =	**△118,271**	
		·기본급		
		경정(86,880원*12명*164일)-기정(86,880원*15명*164일) =	△42,745	
		·유급휴일수당		
		경정(86,880원*12명*45일)-기정(86,880원*15명*45일) =	△11,728	
		·시간외근무수당(주중)		
		경정(0원)-기정(16,290원*2시간*15명*20주) =	△9,774	
		·시간외근무수당(주말)		
		경정(16,290원*8시간*12명*16주)-기정(16,290원*8시간*15명*35주) =	△43,396	
		·연차유급휴가수당		
		경정(86,880원*12명*7월)-기정(86,880원*15명*8월) =	△3,128	
		·명절휴가비		
		경정(0원)-기정(500,000원*15명*1회) =	△7,500	
		◎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		
		경정(250,216,000원*13%)-기정(368,487,000원*13%) =	**△15,375**	
		◎ 위생키트 전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(8개월)		
		경정(115,443,000원)-기정(154,238,000원) =	**△38,795**	
		·기본급		
		경정(86,880원*5명*164일)-기정(86,880원*6명*164일) =	△14,248	
		·유급휴일수당		
		경정(86,880원*5명*45일)-기정(86,880원*6명*45일) =	△3,910	
		·시간외근무수당(주중)		
		경정(16,290원*1시간*5명*20주)-기정(16,290원*4시간*6명*30주) =	△10,100	
		·시간외근무수당(주말)		
		경정(16,290원*8시간*5명*30주)-기정(16,290원*9시간*6명*30주) =	△6,842	
		·연차유급휴가수당		
		경정(86,880원*5명*8월)-기정(86,880원*6명*8월) =	△695	
		·명절휴가비		
		경정(0원)-기정(500,000원*6명*1회) =	△3,000	
		◎ 위생키트 전달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		
		경정(115,443,000원*13%)-기정(154,238,000원*13%) =	**△5,043**	
	201-01 사무관리비	**◎ 신종 감염병 대응(자가격리용) 물품 등 구입**		△387,440
		경정(23,700,000원) - 기정(99,000,000원) =	**△61,300**	
		·마스크 경정(500원*10매*4,000개)-기정(500원*10매*12,000개) =	△40,000	
		·배부용 체온계 경정(220원*10매*6,000개)-기정(220원*10매*12,000개) =	△13,200	
		·안내문 제작 경정(120원*5종*6,000개)-기정(120원*5종*12,000개) =	△3,600	
		·폐기물 봉투 제작 경정(450원*2,000개)-기정(450원*12,000개) =	△4,500	
		◎ 신종 감염병 홍보 예방 물품 등 구입		
		경정(15,120,000원) - 기정(75,600,000원) =	**△58,200**	
		·마스크 경정(500원*8,000개)-기정(500원*100,000개) =	△21,000	
		·종이가방 경정(3,800원*3,000매)-기정(3,800원*12,000매) =	△34,200	
		·홍보용 현수막 소모품 등 경정(100,000원*20개)-기정(100,000원*50개) =	△3,000	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◎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경정(29,460,000원) - 기정(73,200,000원) = △43,740 ·방역 물품(5종)구입 경정(10,000원*200개)-기정(10,000원*2,400개) = △22,000 ·소모성 물품 구입 경정(8,500원*200개)-기정(8,500원*2,400개) = △18,700 ·임시생활시설 근무자 급식비 경정(8,000원*8명*30일*3월)-기정(8,000원*10명*30일*12월) = △23,040 ·임시생활시설 대청소 20,000,000원*1회 = 20,000 ◎ 코로나19 확진환자(격리자) 긴급이송 수수료 경정(200,000원*325회)-기정(200,000원*1,200회) = △175,000 ◎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 운영 ·통지서 및 안내문 인쇄 토너 구입 경정(4,000,000원*5월)-기정(4,000,000원*10월) = △20,000 ◎ 재택치료자 치료키트 전달 차량 임차료 경정(550,000원*4대*6월)-기정(550,000원*8대*10월) = △30,800 ◎ 재택치료 배송 임대차량 수리 400,000원*4대 = 1,600	△387,440
	206-01 재료비	◎ 신종감염병 홍보 및 자가격리용 소독제 : 4,500원*11,938개 경정(53,721,000원)-기정(139,725,000원) = △86,004		
	301-12 기타보상금	◎ 신종 감염병 대응 자가격리자 지원 구호물품 구입 경정(0원)-기정(70,000원*12,000개) = △840,000		
	307-01 의료및구료비	◎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급식비 경정(8,000원*1,564명)-기정(8,000원*18,000명) = △131,488	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~ 12. :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 운영
- 2022.01. ~ 12. :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체계 구축 및 신종감염병 예방·대응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코로나19 긴급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비상근무 운영 - 코로나19 확진자: 459명 - 자가격리자: 10,578명(확진자 밀접접촉자/3,977명, 해외입국자/6,601명) -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: 426명 - 의료폐기물 : 일반폐기물 1,806건, 격리폐기물 46건	
2021년	-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2,422명 - 접촉자 관리 23,102명, 해외입국자 관리 7,569명 -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: 348명 - 7(입소)+3일(격리) 관리 180명 - 병상대기자 관리 419명 - 전원(병원): 105명, 전원(생활치료센터): 12명 - 공동격리자 관리 2,049명 - 재택치료자 이송 97건 - 민간사설구급대 긴급이송 : 761회(115,446,740원)	
2022년	-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: 201,761명(집중관리군: 20,809명/총누계: 204,183명) - 접촉자 관리 2,990명(누계:30,069명), 해외입국자 관리 4,126명(누계:18,296명) - 해외입국자 PCR검사 안내 및 추적관리: 22,247명 - 공동격리자 관리 : 3,007명(누계:5,056명) - 해외입국 임시생활시설운영: 59명(누계:833명) - 7(입소)+3일(격리) : 52명 - 전원(병원): 234명, 전원(생활치료센터): 76명 -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: 10,694명 - 먹는치료제 투약관리 :3,130명 -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운영 : 28,897건 -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 : 8,889가구 - 코로나19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확보: 136개소 - 원스톱진료기관 확보:98개소,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확보: 30개소 -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상담센터 운영:47,597건(시청 행정안내센터:37,558건) - 민간사설구급대 긴급이송 : 493회(43,022,900원) - 코로나19 대응 인력채용(1~6월) : 24명 - 코로나19 대응 인력채용(8~12월) : 12명	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1년	5,173,396	3,790,788	955,996	1,382,608	
2022년	3,551,041	1,561,913		1,989,128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감염병대응·재택치료TF팀장 이순연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	담당자	의료기술8급 김혜인 간호8급 문슬기	전화	4068 4023

(코로나19 자가격리자,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) (P - 217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01. ~ 2022.12.　　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김포시민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자가격리자,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으로 외출을 방지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0**	**1,496,941**	**0**	**194,370**	**1,302,571**	**1,496,941**	
국 비		0				0	
도 비		1,496,941		194,370	**1,302,571**	1,496,941	
시 비		0				0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경기도 사회재난과-22543(2020.10.30.)호 '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기금 지원기준 통보'

-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 예산 先집행 후 재해구호기금 後지원으로 시 예산 보전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재해구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13조 제65조 제9호
근거내용	구호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·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미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도비보조금(재해구호기금) 교부

『코로나19 자가격리자,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(2차)』(경기도 자연재난과-3356, 2022.02.09.호),

『코로나19 자가격리자,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(3차)』(경기도 자연재난과-7881, 2022.04.07.호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=	**1,302,571**	
코로나19 자가격리자,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	301-12 기타보상금	◎ 코로나19 지원 구호물품 구입 : 55,000원*23,683개 경정(1,496,941,000원) - 기정(194,370,000원)	=	1,302,571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: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 구호물품 구입 단가 계약
- 2022.02.~ :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: 9,399세트	
2021년	-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: 28,605세트 -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지원 : 1,283세트	
2022년	-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: 4,933세트 -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지원 : 7,189세트	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1,909,000	1,864,942		44,,058	'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' 사업
2021년	5,173,396	3,790,788	955,996	1,382,608	'신종 감염병 긴급대응' 사업
2022년	194,370	-		194,370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감염병대응·재택치료TF팀장 이순연	담당자	의료기술8급 김혜인	전화	4068

(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) (P - 217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4. ~ 2022. 12.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18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보건소 업무의 정상화 추진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104,720**	**307,320**	**0**	**0**	**307,320**	**202,600**	
국 비	104,720	307,320			**307,320**	202,600	
도 비		0				0	
시 비		0				0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국비 100% 보조사업 :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-1384('22.2.24.)호에 의한 2022년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307,320천원 예산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역보건법	제11조(보건소의 기능 업무)
근거내용	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 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.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.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 마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미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코로나19 대응 체계 유지하며 보건소의 기존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 활용

○ 업무 수요에 맞게 코로나19 콜센터,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및 행정지원, 역학조사, 재택치료관리, 보건소 및 보건지소 민원 응대 등 업무 수행 배치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		307,320	
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	101-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	◎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부임(성립전)			134,232	144,969
		·기본급	86,880원*17명*62일	=	91,572	
		·유급휴일수당	86,880원*17명*16일	=	23,632	
		·시간외근무수당	16,290원*8시간*10명*12일	=	15,639	
		·연차유급휴일수당	86,880원*13명*3월	=	3,389	
		◎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		=	10,737	
		◎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인력 인부임(성립전)			99,738	112,371
		·기본급	16,000원*8시간*3명*146일	=	56,064	
		·유급휴일수당	16,000원*8시간*3명*37일	=	14,208	
		·시간외근무수당	24,000원*6시간*2명*67일	=	25,728	
		·연차유급휴일수당	16,000원*8시간*3명*7월	=	2,688	
		·위험근무수당	50,000원*3명*7월	=	1,050	
		◎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인력 4대보험료	85,338,000원*13%	=	12,633	
		◎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부임			46,266	49,980
		·기본급	86,880원*5명*63일	=	27,368	
		·유급휴일수당	86,880원*5명*15일	=	6,516	
		·시간외근무수당	16,290원*8시간*5명*17일	=	11,078	
		·연차유급휴일수당	86,880원*5명*3월	=	1,304	
		◎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		=	3,714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2.24. : 2022년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
- 2022.04.11. : 2022년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
- 2022.04.26. : 성립전 예산 편성 승인
- 2022.04. ~ : 선별진료소, 역학조사, 재택치료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
- 2022.06. ~ :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인력 3명 채용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인력채용 : 4명	
2021년	- 인력채용 : 9명	
2022년	- 인력채용 : 27명	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45,196	42,406		2,790	
2021년	104,720	101,903		2,817	
2022년	257,340	167,825		89,515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보건행정팀장 김지영	담당자	간호6급 최보라	전화	4003

(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) (P - 217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4. ~ 2022. 5.　　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18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선별진료소(보건소, 의료기관)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비 한시적 지원으로 원활한 진단검사 실시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35,424**	**167,847**	**0**	**50,457**	**117,390**	**132,423**	
국 비	17,712	83,924		25,229	**58,695**	66,212	
도 비	2,657	12,588		3,784	**8,804**	9,931	
시 비	15,055	71,335		21,444	**49,891**	56,280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국도비 보조사업 : 중앙방역대책본부-10231('22.03.18)호, 경기도 질병정책과-12199('22.03.23.)호에 의한 '22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확정내시(추가)로 117,390천원 추가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4조 제2항 제7호, 제8의2호
근거내용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7. 감염병병원체(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,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) 수집 · 검사 · 보존 · 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 8의2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미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확대된 진단검사에 대한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지원경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진단검사 실시

○ 지급대상 : 선별진료소(4개소) 및 임시선별검사소(2개소)의 1개월 이상 근무인력(운영, 의료, 행정인력)

○ 지원금액 : 예산 범위 내에서 실 근무인원 수로 금액산정, 공무원과 비공무원, 업무 구분 없이 4~5월 근무일수별 계산하여 일률지급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	**117,390**	
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	301-12 기타보상금	◎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지급(비공무원) : 25,540원*63명(1일 평균 근무인원)*61일	=	97,494	
	303-01 포상금	◎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지급(공무원) : 25,540원*13명(1일 평균 근무인원)*61일	=	19,896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3. :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
- 2022.04. : 1~3월 개별 근무상황 확인
- 2022.05. :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운영 계획 수립, 지원경비(3개월) 지급
- 2022.06. : 개별 근무상황 확인
- 2022.08. : 제2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
- 2022.09. :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운영 계획 수립, 지원경비(2개월)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선별진료소 4개소(보건소, 의료기관 3개소) -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 운영	
2021년	- 선별진료소 4개소(보건소, 의료기관 3개소) -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(월곶공영차고지 임시선별검사소 8/31~9/30 운영)	
2022년	- 선별진료소 4개소(보건소, 의료기관 3개소) -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(사우동, 마산동)	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				
2021년	34,424	34,422		2	
2022년	50,457	50,382		75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보건행정팀장 김지영	담당자	간호6급 최보라	전화	4003

(신종감염병 방역소독) (P - 218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01. ~ 2022.12. ○ 위치 : 김포시

○ 사업규모 : 방역인력 3명, 민간방역소독 1,000회, 차량 임차 1대, 방역약품 3,000개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신종감염병 긴급 방역소독으로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442,994**	**251,087**	**471,087**	**0**	**-220,000**	**-191,907**	
국 비		0				0	
도 비		0				0	
시 비	442,994	251,087	471,087		**-220,000**	-191,907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코로나19 2급 감염병 조정, 포스트 오미크론 방역·의료 대응 체계에 따른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

○ 코로나19 발생 시 역학조사 간소화 및 점진적 완화 조치로 민간업체 방역소독 감소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	제51조 제1항
근거내용	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(이하‘소독’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1.11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2021년 코로나-19 펜데믹 현상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소독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신종감염병 방역소독		**합 계**		**△220,000**	
	201-01 사무관리비	◎ 민간소독 방역비 경정(100,000원*800회)-기정(100,000원*3,000회)	=	△22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: 신종감염병 방역소독 사업 계획 수립
- 2022.01. : 기간제근로자 인력채용(3명)
- 2022.01.~2022.12. : 신종감염병 방역소독 사업 추진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코로나19 방역 인력 채용: 3명(5개월) - 확진자 가옥 및 접촉시설, 고위험시설 방역소독: 1,430건 - 공공시설(김포도시철도, 도서관 등) 자동분사 손소독기 설치 : 23대 - 방역 소독용 장비구입 : 2종 28대	
2021년	- 코로나19 방역 인력 채용: 3명(8개월) - 확진자 가옥 및 접촉시설, 고위험시설 방역소독: 5,884건 - 방역 소독용 장비구입 : 1종 6대	
2022년	- 코로나19 방역 인력 채용: 3명(8개월) - 확진자 가옥 및 접촉시설, 고위험시설 방역소독: 1,534건 - 방역소독 차량 임차(10개월) : 1대	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20년	-	-	-	-	
2021년	522,994	511,430	-	11,564	(예비비 포함)
2022년	471,087	164,874	-	306,213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	담당자	보건9급 허소영	전화	4119

(보건소 결핵관리사업) (P - 218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4,756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높은 발생 및 사망률과 막대한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결핵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

○ 예산요구 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172,993**	**183,394**	**191,296**	**0**	**-7,902**	**10,401**	
국 비	86,496	91,697	95,648		**-3,951**	5,201	
도 비	25,949	27,509	28,694		**-1,185**	1,560	
시 비	60,548	64,188	66,954		**-2,766**	3,640	
기 타		0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공무직(결핵환자관리 간호사) 호봉 상승 및 퇴직금 적립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에서 감액하여 인력운영비(보건소결핵관리사업)로 전용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결핵예방법	제27조
근거내용	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·도가 부담한다. 1.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. 제 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·도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는 제26조에 따라 시·군·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2021.11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결핵환자 및 고위험군(비순응,다제내성) 환자의 꾸준한 관리로 치료 성공률 제고

○ 가족 접촉자 조사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강화로 추가 결핵환자 발견 및 전파 차단

○ 결핵발병위험 높은 노인대상 검진을 강화하여 결핵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보건소 결핵관리사업		**합 계**		**△7,902**	
	101-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	**◎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(2명)**	=	**△6,993**	
		·기본급 경정(86,880원*2명*210일)-기정(86,880원*2명*230일)	=	△3,476	
		·유급휴일수당 경정(86,880원*2명*60일)-기정(86,880원*2명*67일)	=	△1,217	
		·명절휴가비 경정(0원)-기정(500,000원*2명*2회)	=	△2,000	
		·정액급식비 경정(130,000원*2명*11월)-기정(130,000원*2명*12월)	=	△260	
		·교육비, 여비, 기타수당 등 경정(20,000원*2명*11월)-기정(20,000원*2명*12월)	=	△40	
		◎4대보험료 경정(50,215,200원*13%)-기정(57,206,720원*13%)	=	**△909**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~ 2022.02. : 결핵관리사업 추진계획수립
- 2022.01. ~ 2022.12. : 사업집행
- 2022.12. ~ 2023.01.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결핵등록관리: 196명 / 잠복결핵양성자관리 : 202건 -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: 40개소 -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: 2건(3,046천원) - 검진 : 결핵검진(흉부X선) 2,128건/ 잠복결핵검진(TST, IGRA) 489건	
2021년	- 결핵등록관리: 180명 / 잠복결핵양성자관리 : 133건 -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: 35개소 -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: 3건(979천원) - 검진 : 결핵검진(흉부X선) 1,688건/ 잠복결핵검진(TST, IGRA) 880건	
2022년	- 결핵등록관리: 90명 / 잠복결핵양성자 관리 : 40명 -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: 36개소 - 검진 : 결핵검진(흉부X선) 861건/ 잠복결핵검진(TST, IGRA) 538건	8.12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176,823	161,118	-	15,705	
2021년	173,133	137,292	-	35,841	
2022년	191,296	75,855		115,441	8.12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	담당자	간호6급 심필기	전화	4055

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사 업 설 명 서

보건사업과

(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(국비)-성립전) (P - 221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07. ~ 12.　　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7명(정신건강 전문인력)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 및 중증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도모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0**	**128,870**	**0**	**0**	**128,870**	**128,870**	
국 비	0	64,435	0	0	**64,435**	64,435	
도 비	0		0	0	**0**	0	
시 비	0	64,435	0	0	**64,435**	64,435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관련문서 :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-1038(2022.4.13.)호, 경기도 정신건강과-7398(2022.6.3.)

○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지원,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 7명 채용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정신건강복지법) -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 제15조, 제82조 - 제6조
근거내용	【법률】 **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**제82조(보조금 등)**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 【조례】 **제6조(운영비 지원)**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미해당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예산요구 필요 사유

-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· 상담 · 치료 ·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인력 확충 필요
- 신규채용 인력 (7명): 사례관리 3명, 건강증진 3명, 행정지원 1명

○ 중점 추진사항(사업내용)

-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,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,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
-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·관리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(국비)	307-05 민간위탁금	**인력 인건비(7명)**			
		· 기본급 : 2,189,800원*7명*6월	=	91,972	
		· 수당 : 특수근무수당 50,000원*7명*6월 명절휴가비 1,313,880원*7명*1회	=	11,298	
		· 4대 보험료 : 227,020원*7명*6월	=	9,535	
		· 퇴직적립금 : 182,500원*7명*6월	=	7,665	
		· 여비 : 200,000원*7명*6월	=	8,400	
		소계	**=**	**128,870**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6. : 인력 채용 및 사업 추진
- 2022.07. ~ 12. :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- 2022.12. :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보건사업팀장 박임순	담당자	의료기술 6급 박임순	전화	4121

(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장비 확충)(신규) (P - 221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11. ~ 12.　　○ 위치 : 통진읍 마송리 526

○ 사업규모 :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/ 지상 3층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(분소)를 북부권 청사 3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북부권 이용자 접근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0**	**29,270**	**0**	**0**	**29,270**	**29,270**	
국 비	0	0	0	0	**0**	0	
도 비	0	0	0	0	**0**	0	
시 비	0	29,270	0	0	**29,270**	29,270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2022. 11. 통진읍 제2보건소 개청에 따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확장 이전 비용 및 물품 구입비 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역보건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제13조 및 제24조 제1항 제94조의3 제1항
근거내용	**제24조(비용의 보조)**① 국가와 시·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**제94조의3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심의	공유재산관리계획	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	민간위탁의회동의	출연·출자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확장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

- 사무실 데스크탑, 노트북 등 구입 : 정수승인 완료(회계과-4472(2022.02.16.)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	405-01 자산및물품취득비	**사무용 데스크탑(모니터 포함)**			
		·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: 1,250,000원*8대	=	10,000	
		·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팀 직원 : 1,250,000원*6대	=	7,500	
		·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지원팀 직원 : 1,250,000원*2대	=	2,500	
		소계	**=**	**20,000**	
		· 자살예방팀 교육용 노트북 : 1,500,000원*1대	=	1,500	
		· 교육재료 보관용 냉장고 : 1,500,000원*1대	=	1,500	
		· 사무용 다기능 복합기 : 1,000,000원*1대	=	1,000	
		· 사무용 레이저프린터(흑백) : 400,000원*6대	=	2,400	
		· 사무용 레이저프린터(컬러) : 650,000원*2대	=	1,300	
		· 문서세단기 : 450,000원*1대	=	450	
		· 사무용 유선전화기 : 70,000원*16대	=	1,120	
		소계	**=**	**9,270**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 08. : 제2회 추경예산 편성, 물품 정수승인
- 2022. 11. :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준공(예정)
- 2022. 11.~ 12. :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확장 이전 및 물품구입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보건사업팀장 박임순	담당자	간호8급 기예진	전화	4124

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-성립전) (P - 221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07. ~ 12.　　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김포시민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중독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0**	**117,986**	**0**	**0**	**117,986**	**117,986**	
국 비	0	58,993	0	0	**58,993**	58,993	
도 비	0	0	0	0	**0**	0	
시 비	0	58,993	0	0	**58,993**	58,993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관련문서 :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-1086(2022.4.19.)호, 경기도 정신건강과-7230(2022.5.31.)호

○ 알코올, 약물 등 중독관리 전문인력 6명 채용하여 중독관리사업 수행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-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 제15조 제3항, 제82조 - 제6조
근거내용	【법률】 **제15조의3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**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, 마약, 도박,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**제82조(보조금 등)**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 【조례】 **제6조(운영비 지원)**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	-	-	-	-	-	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알코올, 인터넷(스마트폰), 도박, 약물 등의 중독문제를 가진 고위험군을 조기발견, 개입, 상담, 치료하고 관련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중독문제를 감소

○ 중점 추진사항(사업내용)

・중독질환자 신규발견 및 전문적인 사례관리 인력 채용(6명)

・중독 정신건강 사례관리, 홍보, 교육, 인식개선 사업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	307-05 민간위탁금	**인력 인건비(6명)**			
		· 기본급 : 2,189,800원*6명*6월	=	78,833	
		· 수당 : 특수근무수당 50,000원*6명*6월 명절휴가비 1,313,880원*6명*1회	=	9,684	
		· 4대 보험료 : 116,600원*6명*6월	=	4,198	
		· 퇴직적립금 : 182,500원*6명*6월	=	6,570	
		· 여비 : 200,000원*6명*6월	=	7,200	
		소계	**=**	**106,485**	
		사업비			
		· 프로그램 강사비 : 60,000원*1명*12회	=	720	
		· 중독정신건강 리플릿 제작 : 3,000원*1,000부	=	3,000	
		· 중독정신건강 홍보물 제작 : 5,000원*1,000개	=	5,000	
		· 중독정신건강 캠페인 진행 : 500,000원*5회	=	2,500	
		· 사무용품 구입비	=	281	
		소계	**=**	**11,501**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6. :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채용
- 2022.07. ~ 12. : 중독관리사업 추진
- 2022.12. : 사업 결과보고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보건사업팀장 박임순	담당자	간호8급 기예진	전화	4124

(시군정신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) (P - 222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38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

○ 예산요구 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13,800**	**18,600**	**14,400**	**0**	**4,200**	**4,800**	
국 비	0	0	0	0	**0**	0	
도 비	13,800	18,600	14,400	0	**4,200**	4,800	
시 비	0	0	0	0	**0**	0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관련문서 : 경기도 정신건강과-9229(2022.7.7.)호와 관련

○ 중독관리(7월 1일 중독관리 팀 개설), 정실질환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 14명 신규 채용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	- 제3조 - 제5조
근거내용	【법률】 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11.>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 【조례】 제5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예산요구 필요 사유

-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의 처우 개선 지원
- 신규채용 인력 (14명) : 중독관리 6명, 사례관리 3명, 건강증진 4명, 행정지원 1명,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시군정신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· 종사자 처우개선비 50,000원*14명*6개월 : (경정) 18,600,000원 - (기정) 14,400,000원	=	4,200	증 4,2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7.~ 12. :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 분	주요사업내용		비 고
2020년	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	20명	
2021년	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	24명	
2022년	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	38명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20년	11,100	8,650	0	2,450	
2021년	13,800	12,200	0	1,600	
2022년	14,400	10,350		4,050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보건사업팀장 박임순	담당자	간호8급 기예진	전화	4124

(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(통합건강증진사업) (P - 222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8개 분야 건강증진사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(신체활동, 구강, 영양, 비만 등) 추진으로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련 위험요인 감소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341,672**	**322,402**	**322,402**	**0**	**0**	**-19,270**	
국 비	170,836	161,201	161,201	0	**0**	-9,635	
도 비	0	0	0	0	**0**	0	
시 비	170,836	161,201	161,201	0	**0**	-9,635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신체활동 프로그램 강사비(기타보상금) 7,600천원을 비대면 교육용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민건강증진법	제19조(건강증진사업등)
근거내용	제19조(건강증진사업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. 영양관리 3. 구강건강의 관리 4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.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·연구 6.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	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2013년부터 기존 국고보조사업(9개 사업)을 보건사업지침에 의거 1개 사업으로 통합 편성 운영

-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(8개 분야)

① 음주폐해예방(절주) ② 신체활동 ③ 영양, 비만예방관리 ④ 구강보건
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⑥ 한의약건강증진 ⑦ 여성어린이특화 ⑧ 지역사회중심재활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 고
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	201-01 사무관리비	· 건강생활실천 책자 제작 : 7,600원*1,000권 **: (경정) 153,290,000원 - (기정) 145,690,000원**	 **=**	 **7,600**	증 7,600
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	301-12 기타보상금	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· 성인 대상 스트레칭 교실 강사비 : 80,000원*23회*3월 · 키즈짱! 운동교실 강사비 : 80,000원*20회 · 어린이 요리교실 강사비 : 80,000원*6회 **: (경정) 15,360,000원 - (기정) 22,960,000원**	 = = = **=**	 5,520 1,600 480 **-7,600**	감 7,6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: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
- 2022.02. ~ 11. :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
- 2022.12. :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**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** ·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: 건강100세 운동교실 등 15회 434명 · 건강증진센터 운영 : 1,275명 · 생애주기별 영양관리, 영양상담실 운영 : 492명 ·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: 2,594명 · 절주교육 : 758명 · 대사증후군관리사업(운동,영양,질환상담) : 258명(실인원) **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** · 비대면 고혈압 · 당뇨 표준화 교육(상설) : 115회/115명 · 고혈압당뇨병 1:1 방문 표준화 교육 : 8회/63명 **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** ·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: 690명 · 건강서비스 : 3,490회, 자원연계 246명 **구강보건사업 운영** ·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: 유아, 청소년, 장애인, 경로당 등 1,436회/33,845명 · 학교구강보건실운영 : 3회/272명 · 불소용액양치사업 : 시민 7,213명	

	· 바른이닦기실천 유아기관 : 3개 유아기관/299명 · 임산부 구강관리사업 : 105명 **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** · 한방중풍예방교실 운영 : 893명 ·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: 10명 **모자보건사업 운영** · 임산부 등록 및 관리 : 3,103명 · 임산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 : 9,946건	
2021년	**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** · 비대면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: 1530건강걷기 500명 · 생애주기별 영양관리, 영양상담실 운영 : 755명 · 대사증후군관리사업(운동,영양,질환상담) : 574명 **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** · 고혈압 · 당뇨 표준화 교육 : 96회/240명 **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** ·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: 592명, 건강서비스 : 2,754회 **구강보건사업 운영** ·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: 유아, 청소년, 장애인, 경로당 등 773회/43,196명 · 불소용액양치사업 : 시민 68,529명 · 바른이닦기실천 유아기관 : 3개 유아기관/274명 · 임산부 구강관리사업 : 276명 **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** · '한방으로 내 건강 지키기' 사업 : 1,795명 ·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: 7명 **모자보건사업 운영** · 임산부 등록 및 관리 : 4,032명 · 임산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 : 17,003건	
2022년	**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** · 생애주기별 영양관리, 영양상담실 운영 : 478명 · 대사증후군관리사업(운동,영양,질환상담) : 393명 **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** · 고혈압 · 당뇨 표준화 교육 : 12회/138명(연인원) **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** ·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: 1,114명, 건강서비스 : 2,132회 **구강보건사업 운영** ·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: 유아, 청소년, 장애인, 경로당 등 96회/4,103명 · 불소용액양치사업 : 시민 16,869명 · 임산부 구강관리사업 : 363명 **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** ·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: 1명 **모자보건사업 운영** · 임산부 등록 및 관리 : 2,053명 · 임산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 : 7,095건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343,484	342,490	0	993	
2021년	341,672	340,170	0	1,502	
2022년	322,402	145,294		177,108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건강증진팀장 김애경	담당자	보건8급 김지선	전화	4185

(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) (P - 223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동 108

○ 사업규모 : 관내 초등학교 4학년 6,050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예방중심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 실현

○ 예산요구 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235,200**	**254,100**	**275,100**	**0**	**-21,000**	**18,900**	
국 비	0	0	0	0		0	
도 비	164,640	177,870	192,570	0	**-14,700**	13,230	
시 비	70,560	76,230	82,530	0	**-6,300**	5,670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경기도 공공의료과-7700(2022.06.29.)호에 의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구강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	제7조, 제18조
근거내용	제7조(구강보건사업의 시행)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 ②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보건소(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.<개정 2015. 5. 18.>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,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제18조(구강건강사업)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<개정 2003. 7. 29.> 1.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, 2.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, 3.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 4.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미해당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협약된 치과의료기관을 통하여 구강검진, 구강보건교육, 예방진료 등을 받고 치과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증진을 위함.

(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2018.10.01.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	201-01 사무관리비	· 홍보 물품구입 : 10,000*50개*2종 **: (경정) 11,500,000원 - (기정) 12,500,000원 = -1.000**	감 1,000
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: 40,000원*500명 **: (경정) 242,000,000원 - (기정) 262,000,000원 = -20,000**	감 20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4. : 계획수립, 참여 치과의료기관 선정
- 2022.05 : 참여의료기관, 초등학교 사업추진 절차 안내 및 지침서 배부
- 2022.05. 16 :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시작
- 2022.05. ~ 11. 30. : 초등학교 4학년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실시
- 2022.12. : 사업결과 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· 참여의료기관 계약 ·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건강검진 차년도 연기 결정	
2021년	· 지역협의체 구성 ·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8,577명	
2022년	· 참여의료기관 계약 ·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2,239명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222,600	40	222,560	222,560	2021년 이월
2021년	457,760 (222,560+235,200)	354,146	0	103,614	
2022년	254,100	94,572		159,528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건강증진팀장 김애경	담당자	보건8급 홍윤정	전화	4133

(국가예방접종 실시) (P - 223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246,456건(예방접종 목표 건수)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예방 가능한 감염병 대상 예방접종 실시로 집단 감염병 발생 예방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7,884,852**	**9,064,472**	**8,974,664**	**103,036**	**-13,228**	**1,179,620**	
국 비	3,942,426	4,532,236	4,487,332	51,518	**-6,614**	589,810	
도 비	1,182,727	1,359,671	1,346,200	15,455	**-1,984**	176,944	
시 비	2,759,699	3,172,565	3,141,132	36,063	**-4,630**	412,866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경기도 질병정책과-17179호(2022. 5. 2.) 관련, 2022년 예산액 감액 내시

○ 21-22절기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을 반영하여 22-23절기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24조제1,2항, 제28조제1항
근거내용	제24조(필수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제28조(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)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,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고, 그 내용을 시·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의결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2021.11.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어린이(만12세 이하)·성인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민간병·의원(위탁의료기관)접종비 지원

○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병·의원(위탁의료기관) 접종비 지원

○ B형간염 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 간염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항체 검사비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국가예방접종 실시	307-01 의료 및구료비	· 60개월~12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: 33,070원*400건 : 경정 (1,004,434,000원) - 기정 (1,017,662,000원) =	-13,228	감 13,228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: 사업지침 시달 및 국·도비 보조금 내시
- 2022.01. ~ 12. : 매월 2회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등 지원 실시
- 2022.10. ~ 12. :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
- 2022.12. : 사업 집행 결과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·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 : 1,248건 ·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: 161,364건 ·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: 382건	
2021년	·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: 165,543건 ·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: 212건 ·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 : 28건	
2022년	·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: 71,442건 ·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: 79건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8,283,994	8,223,507	11,000	49,487	
2021년	7,884,852	7,884,849	0	3	
2022년	9,064,472	4,179,085		4,885,387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간호7급 감가현 간호8급 서화정	전화	4156 4157

(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자체)) (P - 223)

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-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250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

○ 예산요구 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0**	**240,500**	**565,290**	**0**	**-324,790**	**240,500**	
국 비	0	0	0	0	**0**	0	
도 비	0	0	0	0	**0**	0	
시 비	0	240,500	565,290		**-324,790**	240,500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2022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대상

- 보조사업(도 70%, 시 30%)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자, 예외지원 대상(다태·세째아 이상 등)
- 자체사업(시비 100%) 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자

○ **보조사업 대상**이 **'21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에서 '22년 150%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**되어 **자체사업 대상 인원이 감소**됨에 따라 **자체 예산 감액 필요**

- 당초 자체사업 대상자 월 평균 55명 추계 → '22년 지원대상 월 평균 21명으로 감소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15조의 18
근거내용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1.11.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산모·신생아 대상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해 주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○ 도비보조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자체사업 대상자 감소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자체)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경정 (240,500,000원) - 기정 (565,290,000원) =	-324,790	감 324,790

□ 사업 추진계획

- 2022.01.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계획 수립
- 2022.01. ~ 12. : 대상자 접수 및 지원, 사업비 예탁 및 관리
- 2022.12.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(셋째아 이상 지원) : 26명	
2021년	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(셋째아 이상 지원) : 보조사업에 대상 기준 포함되어 자체사업 미추진	
2022년	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(중위소득 150% 초과자) : 187명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15,000	15,000	0	0	
*2021년	0	0	0	0	
2022년	565,290	180,000		385,290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* 2021년 산모신생아지원사업(보조사업)에 시비사업 대상자(셋째아 이상 출산가정)가 포함되어 자체사업 미추진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간호7급 김기란	전화	4152

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전환사업)) (P - 22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1,400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도움 인력) 지원으로 엄마의 건강한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1,507,400**	**1,617,400**	**1,507,400**	**0**	**110,000**	**110,000**	
국 비	1,055,000	0	0	0	**0**	-1,055,000	
도 비	0	1,132,000	1,055,000	0	**77,000**	1,132,000	
시 비	452,400	485,400	452,400	0	**33,000**	33,000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**보조사업 대상**이 **'21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에서 '22년 150%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**되어 **대상 인원 증가 및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 증액 필요** (건강증진과-8921(2022.6.17.))

- 보조사업 대상 월 평균 108명 → '22년 지원대상 월 평균 140명으로 증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15조의18
근거내용	제15조의18(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2021.11.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출산 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

- **대상 확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→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** 및 예외지원 대상(다태·셋째아 이상 등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(전환사업)	301-01 사회보장적 수혜금	·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지원 : 130명*846,200원(통합형 지원금 평균) **: 경정 (1,617,400,000원) - 기정 (1,507,400,000원) =**	**110,000**	증 110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향후계획

- 2022.01. : 사업계획 수립
- 2022.01.~ 12. : 사업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및 관리, 건강관리사 신청·지원
- 2022.12. : 사업집행 결과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	비고
2020년	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924명)	
2021년	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1,331명)	
2022년	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961명)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20년	1,574,529	1,314,870	0	259,659	
2021년	1,507,400	1,507,400	0	0	
2022년	1,507,400	1,004,734		502,666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간호7급 김기란	전화	4152

(임신축하금 지원) (P - 22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3,760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임신축하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가정경제 부담 완화

○ 예산요구 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1,962,000**	**1,880,000**	**1,560,000**	**0**	**320,000**	**-82,000**	
국 비	0	0	0	0	**0**	0	
도 비	0	0	0	0	**0**	0	
시 비	1,962,000	1,880,000	1,560,000	0	**320,000**	-82,000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임신축하금 신청자 수 증가 (연초 월 평균 예상 신청건수 : 260건 → 월 평균 신청 건수 : 313건)

○ 임신축하금 10월 소진 예상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	제1조
근거내용	이 조례는 「저출산 · 고령사회 기본법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녀출산가정에 임신·출산 축하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1.11.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임신축하금 지원으로 임신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

○ 임신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

○ 김포시 거주 180일 이상 지난 임산부에게 김포페이로 50만원 지급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임신축하금 지원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· 임신축하금 : 500,000원*320명*2월 **: 경정 (1,880,000,000원) - 기정 (1,560,000,000원) =**	**320,000**	증 320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: 임신축하금 지원 계획 수립
- 2022.01. ~ 12. : 사업추진 및 홍보
- 2022.12. :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2020. 1. : 임신축하금 접수 시작 - 임신축하금 지원 : 4,161명 / 2,080,500,000원	
2021년	- 2021.4.19. : 접수처를 보건소에서 온라인(정부24)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- 임신축하금 지원 : 3,884명 / 1,942,000,000원	
2022년	- 임신축하금 지원 : 2,255명 - 임신축하금 예탁 현황 : 1,560,000,000원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2,150,000	2,080,500	0	69,500	
2021년	1,962,000	1,948,500	0	13,500	
2022년	1,560,000	1,127,500		432,500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보건9급 정혜현	전화	4153

(첫만남이용권) (P - 22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3,300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제공을 통해 초기 양육비용을 절감하고 출산·양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책임 강화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0**	**6,600,000**	**5,742,000**	**0**	**858,000**	**6,600,000**	
국 비	0	4,950,000	4,292,000	0	**658,000**	4,950,000	
도 비	0	495,000	435,000	0	**60,000**	495,000	
시 비	0	1,155,000	1,015,000	0	**140,000**	1,155,000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**사업 대상 증가 및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 증액 필요** (道 인구정책담당관-5295(2022.7.04.)

-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2022년 사업량 2,871명 → 3,300명으로 증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	제10조
근거내용	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약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 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 200만원을 출생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대상·방법·시기 및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예정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2021.11.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영아기 집중투자 세부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‘첫만남 이용권’ 사업 신규 추진

○ 사업내용 : ’22.1.1. 이후 출생 신고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 지급(국민행복카드 바우처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첫만남 이용권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· 첫만남 이용권 2,000,000원*429명 : (경정) 6,600,000,000원 - (기정) 5,742,000,000원 =	858,000	증 858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: 사업 신설 홍보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집행 협조 요청
- 2022.01. ~ 12. 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사이트(복지로 또는 정부24)에서 연중 접수 및 바우처 지급
- 2022.12. : 사업 정산 및 집행 결과 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2년	첫만남 이용권 지원 : 1,618명 (3,236,000천원)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 (예탁액)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2년	5,742,000	4,517,000		1,225,000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간호7급 김기란	전화	4152

(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) (P - 22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131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입원 치료비용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치료 지연·포기를 방지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2회 추경 증감액 (E)		
계	**90,000**	**88,992**	**102,000**	**0**	**-13,008**	**-1,008**	
국 비	45,000	44,496	51,000	0	**-6,504**	-504	
도 비	22,500	22,248	25,500	0	**-3,252**	-252	
시 비	22,500	22,248	25,500	0	**-3,252**	-252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경기도 건강증진과-11279(2022.07.26.)호 관련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

○ '21년 지원자 월평균 13명 → '22년 지원자 월평균 11명으로 감소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 1항, 2항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미숙아 의료비 지원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출생아로 체중2.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의료비의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

○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출생아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	307-01 의료 및 구료비	·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: (경정) 88,992,000원 - (기정) 102,000,000원 =	-13,008	감 13,008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~ 02. : 사업 계획 수립. 산부인과 등 관련 의료기관 대상 사업 홍보
- 2022.01. ~ 12. : 대상자 상담, 접수 및 의료비 지급
- 2022.12. : 사업 집행결과 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· 미숙아 및 선천청 이상아 의료비 지원 : 90명	
2021년	· 미숙아 및 선천청 이상아 의료비 지원 : 156명	
2022년	· 미숙아 및 선천청 이상아 의료비 지원 : 77명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46,000	45,882	0	118	
2021년	90,000	84,975	0	5,024	
2022년	102,000	46,697	0	55,303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의료기술8급 권여민	전화	4155

(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) (P - 22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70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발견·치료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91,000**	**81,400**	**70,000**	**0**	**11,400**	**-9,600**	
국 비	45,500	40,700	35,000	0	**5,700**	-4,800	
도 비	22,750	20,350	17,500	0	**2,850**	-2,400	
시 비	22,750	20,350	17,500	0	**2,850**	-2,400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경기도 건강증진과-11279(2022.07.26.)호 관련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

○ 당초 확정내시 대비 지원실적 증가에 따른 증액

선천성대사이상 조제분유 지원 1건당 평균 800,000원 → '22년 선천성대사이상 조제분유 지원 1건당 평균 942,500원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심의	공유재산관리계획	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	민간위탁의회동의	출연·출자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

- 선별검사비 지원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출생아 중 생후 28일 이내 실시한 외래 선별검사비(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비)의 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
- 확진검사비 지원 :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

-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분유 및 치료비(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)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 조제분유 지원 : (경정) 81,400,00원 - (기정) 70,000,000원 =	11,400	증 11,4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~ 02. : 사업 계획 수립. 산부인과·소아과 등 관련 의료기관 대상 사업 홍보
- 2022.01. ~ 12. : 대상자 상담, 접수 및 의료비·특수 조제 분유 지급
- 2022.12. : 사업 집행결과 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·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(14건) ·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지원(30건)	
2021년	·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(3건) ·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(26건) ·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지원(67건)	
2022년	·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(8건) ·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지원(41건)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44,364	39,068	0	5,296	
2021년	91,000	90,955	0	44	
2022년	70,000	52,408	0	17,591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의료기술8급 권여민	전화	4155

(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) (P - 225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업규모 : 1,400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에게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,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326,000**	**1,458,000**	**574,000**	**0**	**884,000**	**1,132,000**	
국 비	163,000	729,000	287,000	0	**442,000**	566,000	
도 비	81,500	364,500	143,500	0	**221,000**	283,000	
시 비	81,500	364,500	143,500	0	**221,000**	283,000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경기도 건강증진과-7897(2022.5.27.)호, 건강증진과-11699(2022.8.2.)호, 건강증진과-12269(2022.8.12.)호 관련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

○ 경기도 건강증진과-11112(2022.7.22.)호 관련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('22년 8월 1일)

- 가형(기저귀) 64천원 → 70천원
- 나형(기저귀 및 조제분유) 150천원→ 160천원
- 다형(조제분유 추가) 86천원 → 90천원

○ 8월 기준 바우처 정산결과 부족액 442,442천원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기저귀 바우처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(2인 이상)가구의 만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기저귀 지원(70천원/월)

○ 조제분유 바우처 : 기저귀 수급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(90천원/월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: 630,000원 * 1,400명 **: 경정 (1,458,000,000원) - 기정 (574,000,000원) =**	**884,000**	증 884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~ 12. : 사업 집행 (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및 예탁)
- 2022.12. :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· 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 : 1,207명	
2021년	· 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 : 1,757명	
2022년	· 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 : 1,358명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399,139	399,139	0	0	
2021년	326,000	326,000	0	0	
2022년	574,000	574,000		0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의료기술8급 권여민	전화	4155

(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(방문건강관리)) (P - 226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 업 량 : 3,000가구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허약예방

○ 예산요구 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52,672**	**67,822**	**53,822**	**-**	**14,000**	**15,150**	
국 비	26,336	33,911	26,911	0	**7,000**	7,575	
도 비	0	0	0	0	**0**	0	
시 비	26,336	33,911	26,911	0	**7,000**	7,575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2022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 증액 변경 내시 : 경기도 건강증진과-11529(2022.07.29.)호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민건강증진법 / 지역보건법	제3조, 제11조
근거내용	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 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제1항 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 사.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모바일 현장 업무체계 도입 및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용 태블릿 PC 구매

○ 태블릿 기반의 서식 입력 및 건강관리 실시, 대상자 관리, 건강면접조사, 방문일정관리 등의 기능을 모바일 업무환경(MPHIS)에 구축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(PHIS)과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 (방문건강관리)	405-01 자산및물품취득비	· 태블릿PC 구입 : 1,400,000원*10대 **: (경정) 14,000,000 - (기정) 0원**	=	14,000	증 14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 1. :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
- 2022. 1. ~ 12. : 사업 추진
- 2022. 12. : 방문보건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·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: 3,317가구	
2021년	·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: 2,703가구	
2022년	·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: 2,571가구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20년	52,168	52,167	0	1	
2021년	52,672	52,668	0	5	
2022년	53,822	49,501	0	4,321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방문보건팀장 장미경	담당자	간호8급 이혜진	전화	4142

(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(AI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))

(P - 226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○ 사 업 량 : 150명

○ 사업대상 : 방문등록대상자, 독거노인,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

○ 사업목적 : AI-IoT[1]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,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-	**81,696**	**70,446**	-	**11,250**	**81,696**	
국 비	0	40,848	35,223	0	**5,625**	40,848	
도 비	0	0	0	0	**0**	0	
시 비	0	40,848	35,223	0	**5,625**	40,848	
기 타	0	0	0	0	**0**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2022년 AI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증액 변경내시 : 경기도 건강증진과-11529(2022.07.29.)호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민건강증진법 / 지역보건법	제3조, 제11조
근거내용	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 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제1항 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 사.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1) AI(Artificial Intelligence)인공지능, IoT(Internet of Things)사물인터넷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비대면 건강관리 컨설팅으로 어르신,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

○ 오늘의 건강APP 실행, 미션 제공, 모니터링, 인센티브 제공

○ 스마트폰 보유 또는 사양과 상관없이 모바일 앱 연동, 실행 기능이 탑재된 AI 스피커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, 독거노인까지 사업참여 확대 가능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 (AI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)	201-01 사무관리비	· 활동량계, 혈당계 등 소모품 5종 : (경정) 58,813,000원 - (기정) 47,963,000원 =	10,850	증 10,850
	405-01 자산취득비	· 악력계 400,000원*1대 : (경정) 2,200,000원 - (기정) 1,800,000원 =	400	증 4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 01. : 온라인 간담회
- 2022. 02. ~ .06. : 시범사업 수행 준비, 대상자 발굴
- 2022. 06. :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(1명), 디바이스 장비 구매 완료
- 2022. 07. ~ 12. : 서비스 제공 및 결과 평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방문보건팀장 장미경	담당자	간호8급 이혜진	전화	4142

(치매안심센터 운영) (P - 226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치 : 사우중로 73번길 52

○ 사업규모 : 1개소(698.27㎡), 60세 이상 인구 69,415명(고촌읍, 동지역)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환자와 가족의 질 향상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2회 추경 증감액 (E)		
계	285,831	287,644	287,644	0	0	1,813	
국 비	228,665	230,115	230,115	0	0	1,450	
도 비	8,575	8,629	8,629	0	0	54	
시 비	48,591	48,900	48,900	0	0	309	
기 타	0	0	0	0	0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치매안심센터 사업추진 여비 10,080천원 감액하여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치매관리법	제3조
근거내용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"치매관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치매예방·조기검진·돌봄 등 '통합관리서비스' 제공으로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 및 가족 부양부담 경감

○ 치매안심센터 청사 공공 운영 및 전 시민 대상 치매 인식개선 사업 추진

○ 치매 고위험군 및 정상 노인 대상 치매 예방관리 교육 홍보로 치매 발생 감소 또는 진행 지연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치매안심센터 운영	202-01 국내여비	·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 여비 (140,000원*6명*12월) : (경정) 3,120,000원 - (기정) 13,200,000원	=	-10,080	감 10,080
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조호물품(성인용 기저귀 등 6종) 840,000원*12월 : (경정) 78,480,000원 - (기정) 68,400,000원	=	10,080	증 10,08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: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
- 2022.01. ~ 12. :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추진
- 2022.12. : 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·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: 2,017명 / 환자 등록 관리: 1,455명 / 진단감별검사: 292명·190명 · 치매치료관리비 지원: 908명 /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: 12종, 7,886건(실인원 755명) · 치매노인 실종예방: 배회인식표 발급 130명 / 지문등록: 124명 / 배회감지기 지원: 25명(누적) ·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: 84회(914명) · 경도인지장애, 정상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: 24회(161명) · 치매가족 교실, 치매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: 15회(124명) · 치매인식개선: 치매극복선도학교(3개소), 치매파트너 양성: 588명	
2021년	·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: 2,770명 / 환자 등록 관리: 1,644명 / 진단감별검사: 366명·131명 ·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: 931명 /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지원: 10종, 3,169건(실인원 323명) · 치매 노인 실종 예방: 배회 인식표 발급 37명 / 지문등록: 162명 / 배회감지기 지원: 43명(누적) · 경증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: 107회(506명) · 경도인지장애, 정상군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: 82회(400명) · 치매 가족 교실, 치매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: 36회(309명) · 치매 인식개선: 치매극복선도학교(2개소), 치매극복선도단체(1개소), 치매파트너: 557명, 파트너플러스: 160명	
2022년	·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: 1,489명 / 환자 등록 관리: 1,745명 / 진단감별검사: 190명·62명 ·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: 908명 /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지원: 6종, 1,658건(실인원 290명) · 치매 노인 실종 예방: 배회 인식표 발급 27명 / 지문등록: 54명 / 배회감지기 지원: 83명(누적) · 경증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: 24회(100명) · 경도인지장애, 정상군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: 49회(519명) · 치매 가족 교실, 치매 가족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: 11회(107명) · 치매 인식개선: 치매극복선도학교(2개소), 치매극복선도단체(1개소), 치매파트너: 501명, 파트너플러스: 41명	8.12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20년	253,265	248,495	0	4,770	
2021년	285,831	264,760	0	21,070	
2022년	287,644	134,021		153,623	8.12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치매관리팀장 이청희	담당자	간호8급 박다윗 간호8급 김한나	전화	4167 4168

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사 업 설 명 서

북부보건과

(북부보건과 청사 이전) (P - 229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11.~2022.12.　　○ 위치 : 통진읍 마송리 526, 527번지

○ 사업규모 :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3,772.8㎡(1,141평)/ 지상 4층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제2보건소 청사 준공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북부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추진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2회 추경 증감액 (E)		
계	0	357,640	0	0	357,640	357,640	
국 비		0				0	
도 비		0				0	
시 비	0	357,640	0	0	357,640	357,640	
기 타		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2022.11.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개관 준비 및 내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제94조의3 제1항
근거내용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■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청사 이전 설치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신축 건물 입간판 등 제작

○ 사무실 및 민원실 가구, 집기류 등 구입

○ 민원실 순번발급기 구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가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북부보건과 청사 이전		**합 계**			**357,640**	
	201-01 사무관리비	◎제2보건청사 포장 이사비용	6,250,000원	=	6,250	28,675
		◎정수기, 공기청정기 이전비	200,000원	=	200	
		◎정맥인식기 이전 설치비	300,000원	=	300	
		◎통신장비 이전 설치비	400,000원	=	400	
		◎개청식 행사물품 구입비	2,000,000원	=	2,000	
		◎청사 입주청소 용역비	19,525,000원	=	19,525	
	401-01 시설비	◎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공사비	15,000,000원	=	15,000	64,346
		◎간판, 전자동형 현수막게시대 설치비		=	**49,346**	
		·간판, 표찰 및 안내판 제작, 이전 간판 철거				
			34,496,000원	=	34,496	
		·전자동형 현수막게시대	14,850,000원	=	14,850	
	405-01 자산및물품취득비	◎가구 등 집기류구입(지상1~4층)	256,040,000원	=	256,040	264,619
		◎민원실 TV 구입	1,000,000원*1대	=	1,000	
		◎민원실 순번발급기 구입		=	**7,579**	
		·순번 키오스크	4,070,000원*1대	=	4,070	
		·순번표시기	286,000원*3개	=	858	
		·호출기	88,000원*3개	=	264	
		·TV메인뷰	2,145,000원*1대	=	2,145	
		·설치 및 자재비	242,000원	=	242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08. : 북부권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계획수립
- 2019.09. : 북부보건과 신설/1과 4팀
- 2019.12. :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기본설계 완료
- 2020.08. :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착공
- 2022.04.~2022.05. : 제2보건소 신축공사 내부평면조정 완료
- 2022.11. :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준공(예정)
- 2022.12. : 청사 이전 및 시설 확충 예산 집행, 보건소 업무 개시, 단계별 사업 확대 추진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북부보건과	보건관리팀장 최계숙	담당자	보건7급 최숙경	전화	4192

(진료검진사업 운영) (P - 229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11.~2022.12.　　○ 위치 : 통진읍 마송리 526, 527번지

○ 사업규모 :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3,772.8㎡(1,141평)/ 지상 4층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제2보건소 청사 준공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북부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추진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2회 추경 증감액 (E)		
계	0	1,326,923	0	0	1,326,923	1,326,923	
국 비		0				0	
도 비		0				0	
시 비	0	1,326,923	0	0	1,326,923	1,326,923	
기 타						0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2022.11.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설립에 따른 진료검진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 예산 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제94조의3 제1항
근거내용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■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북부권 제2보건소 진료검진사업 운영으로 북부지역 주민의 보건소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제고

○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진료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및 관련 예산 확충

○ 원심분리기, 광학현미경 정수승인 : 회계과-2609(2022.01.27. 시행)

○ 무정전전원장치 정수승인: 회계과-17424(2022.06.23. 시행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		1,326,923	
진료검진사업 운영	405-01 자산및물품취득비	◎검사실 장비 구입		=	511,040	
		·자동생화학 분석장비	120,000,000원*1대	=	120,000	
		·자동면역학 분석장비	120,000,000원*1대	=	120,000	
		·혈액학 분석장비	55,000,000원*1대	=	55,000	
		·당화혈색소 측정기	4,400,000원*1대	=	4,400	
		·소변자동분석기	8,500,000원*1대	=	8,500	
		·생물안전작업대	14,000,000원*1대	=	14,000	
		·인큐베이터(배양기)	6,600,000원*1대	=	6,600	
		·원심분리기	13,000,000원*1대	=	13,000	
		·광학현미경	15,000,000원*1대	=	15,000	
		·약품냉장고(1470L)	12,100,000원*1대	=	12,100	
		·약품냉장고(645L)	9,350,000원*2대	=	18,700	
		·검체냉장고(300L)	700,000원*1대	=	700	
		·결핵균자동염색기	27,780,000원*1대	=	27,780	
		·바코드 라벨프린터	740,000원*1대	=	740	
		·디지털 궤도형쉐이커	1,100,000원*1대	=	1,100	
		·빈혈검사기	1,100,000원*1대	=	1,100	
		·슬라이드 워머	500,000원*1대	=	500	
		·자동파이펫	400,000원*4대	=	1,600	
		·전자저울	1,500,000원*1대	=	1,500	
		·Vortex Mixer	300,000원*1대	=	300	
		·Roller Mixer	400,000원*1대	=	400	
		·임상실험대 및 채혈대	14,520,000원	=	14,520	
		·고압멸균기	13,500,000원*1대	=	13,500	
		·유전자증폭기	60,000,000원*1대	=	60,000	
		◎방사선실 장비 구입		=	323,560	
		·양방사선 골밀도 측정기	70,000,000원	=	70,000	
		·X-RAY SYSTEM	210,000,000원	=	210,000	
		·PACS SYSTEM	43,560,000원	=	43,560	
		◎예방접종실 장비 구입		=	27,460	
		·약품냉장고(1470L)	12,100,000원*1대	=	12,100	
		·약품냉장고(645L)	9,350,000원*1대	=	9,350	
		·무정전 전원장치	4,180,000원*1대	=	4,180	
		·유아용 자동 신장체중계	980,000원*1대	=	980	
		·성인용 자동 신장체중계	850,000원*1대	=	850	
		◎민원실 혈압계 구입	1,250,000원*1대	=	1,250	
		◎진료실 혈압계 구입	100,000원*2대	=	200	
		◎결핵실 장비 구입		=	21,170	
		·음압채담부스	14,000,000원*1대	=	14,000	
		·공기청정 살균기	2,500,000원*2대	=	5,000	
		·약포장기	270,000원*1대	=	270	
		·바코드프린터	500,000원*1대	=	500	
		·객담 보관용 냉장고(300L)	700,000원*1대	=	700	
		·시약 보관용 냉장고(300L)	700,000원*1대	=	700	
		◎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센터 장비 구입		=	400,268	
		·2인용간섭파 치료기	14,520,000원*2대	=	29,040	
		·극초단파 치료기	14,300,000원*1대	=	14,300	
		·정형용 견인장치	14,850,000원*1대	=	14,850	
		·초음파 치료기	2,970,000원*1대	=	2,970	
		·레이져 치료기	2,750,000원*1대	=	2,750	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2회추경 요구액	비고
		·적외선 치료기	154,000원*2대	=	308	
		·온열황토 침대	880,000원*3대	=	2,640	
		·초욕치료기	330,000원*1대	=	330	
		·순환운동 시스템(6종)	280,000,000원	=	280,000	
		·재활런닝머신	3,300,000원*2대	=	6,600	
		·좌식자전거	1,320,000원*2대	=	2,640	
		·수동 상하지 운동기	2,970,000원*2대	=	5,940	
		·전동 상하지 운동기	6,600,000원*2대	=	13,200	
		·등속성 상하지 운동기	13,200,000원*1대	=	13,200	
		·수력저항식 상하지 운동기	5,500,000원*1대	=	5,500	
		·전동작업테이블	2,500,000원*1대	=	2,500	
		·소근육 운동세트(10종)	3,500,000원*1대	=	3,500	
		◎체력측정실 장비 구입		=	**27,975**	
		·악력 측정기	900,000원*1대	=	900	
		·윗몸일으키기 측정기	2,400,000원*1대	=	2,400	
		·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기	2,900,000원*1대	=	2,900	
		·종합기능체력 측정기	2,900,000원*1대	=	2,900	
		·에어로바이크 측정기	6,900,000원*1대	=	6,900	
		·터미널&다중채널신호수집기	4,900,000원*1대	=	4,900	
		·운동영양처방프로그램	4,600,000원*1개	=	4,600	
		·RFID 카드리더기 및 부품	675,000원*1개	=	675	
		·데스크탑&TFT 모니터	1,400,000원*1개	=	1,400	
		·칼라프린터	400,000원*1개	=	400	
		◎영양상담실 조리실습실 장비 구입		=	**5,960**	
		·유아용 자동 신장체중계	980,000원*1대	=	980	
		·성인용 자동 신장체중계	850,000원*1대	=	850	
		·조리실습실 냉장고(1074L)	2,010,000원*1대	=	2,010	
		·조리실습실 오븐	655,000원*2대	=	1,310	
		·조리실습실 주방기구소독기	810,000원*1대	=	810	
		◎구강보건실 장비 구입		=	**7,340**	
		·불소용액 제조기	2,500,000원*1대	=	2,500	
		·치아교구모형세트	1,980,000원*1대	=	1,980	
		·위상차현미경	2,860,000원*1대	=	2,860	
		◎모유수유실 냉장고 구입(300L)	700,000원*1대	=	**700**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08. : 북부권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계획수립
- 2019.09. : 북부보건과 신설/1과 4팀
- 2019.12. :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기본설계 완료
- 2020.08. :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착공
- 2022.04.~2022.05. : 제2보건소 신축공사 내부평면조정 완료
- 2022.11. :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준공(예정)
- 2022.12. : 청사 이전 및 시설 확충 예산 집행, 보건소 업무 개시, 단계별 사업 확대 추진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북부보건과	보건관리팀장 최계숙	담당자	보건7급 최숙경	전화	4192

(북부권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(방문건강관리) (P - 230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연 중 ○ 위 치 : 통진읍 김포대로 2225 통진메디컬타워 4층

○ 사업규모 : 1,800가구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강화로 삶의 질 향상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 예산액 (A)	2022년 예산액				2021년 예산 대비 증감 (F=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증감액 (D)	**2회 추경 증감액 (E)**		
계	**37,500**	**45,900**	**37,500**	**0**	**8,400**	**8,400**	
국 비	18,750	22,950	18,750	0	**4,200**	4,200	
도 비							
시 비	18,750	22,950	18,750	0	**4,200**	4,200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건강증진과-11529(2022.7.29.시행)호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AI-IoT기반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 시스템과 연동되는 태블릿 PC 6대를 구입 하여 방문 대상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가하고자 함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민건강증진법/ 지역보건법	제3조(책임) 제1항/ 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제1항 제5호
근거내용	- 제1항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 - 제5호 :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AI-IoT기반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위한 테블릿 PC 구입

-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모니터링 및 지역보건의료시스템 건강서비스 내역 조회 및 기록관리
-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등록, 사전 건강면접 조사표 입력 등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		비 고
		합계	**=**	**45,900**	
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(방문건강관리)	201-01 사무관리비	◎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· 사무용품, 피복비 등 구입 : 250,000원* 4회 · 방문사업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: 1,100원* 3,000개	= =	1,000 3,300	4,300
	201-02 공공운영비	◎ 비대면 방문건강 대상자 관리 · 휴대폰 요금 75,000원 * 12월	=	900	900
	307-01 의료및구료비	◎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료지원품 구입 · 영양제 등 2종 : 6,270원 * 300명 *4회*3월 · 외용 소염진통제 : 2,000원 * 700명*4회 · 황사마스크 : 1,000원*928명 · 영양식이 : 20,000원*160명	= = = =	22,572 5,600 928 3,200	32,300
	405-01 자산및물품취득비	◎ AI-IoT기반 시범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테블릿 PC 구입 · 테블릿 PC : 1,400,000원 * 6대	=	8,400	8,4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01. ~ 12. :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 및 관리
- 2022.06월 : 북부권 AI-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 모집
- 2022.07. ~ 12. : 대상자 모니터링 시행 및 AI-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추진 시범운영
- 2023.01. ~ : AI-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추진 활용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방문등록가구/ 서비스 건: 2,126가구/13,245건, 자원연계1,586건, 의료용품 지원자수 1,355명(8,366건) 주민 주도형 건강돌봄 공동체 운영: 2개소(월곶1, 하성1) 6회 81명, 지역자원활용(장소 협조 등)	
2021년	방문등록가구/ 서비스 건: 2,098가구/5,936건, 자원연계 1,928건, 의료용품 지원자수 2,568명 우울증 예방 원예프로그램 운영: 16회 실인원 30명 연인원 240건(2주/1회 8개월 과정)	
2022년	방문등록가구/ 서비스 건: 2,051가구/2,728건, 자원연계 481건, 의료용품 지원자수 661명 허약노인 식생활 프로그램 운영: 실인원 25명 / 연인원 155명 AI-IoT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 50명 등록	2022. 8. 12.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20년	37,200	37,197	-	3	
2021년	37,500	37,499	-	1	
2022년	37,500	6,388	-	31,112	2022.8.12.기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북부보건과	방문보건팀장 고종중	담당자	간호6급 고종중	전화	4201